

신구대비표 (중국건설은행)

구분	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	변경전 ^{주)}	변경후 ^{주)}
수신	예금거래기본약관	<p>제22조[약관의 변경]</p> <p>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①항에 의한 게시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. <u>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개별 통지</u> 4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. 거래통장에 표기 6.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<p>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</p>	<p>제22조[약관의 변경]</p> <p>① ③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①항에 의한 게시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. <u>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</u> 4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. 거래통장에 표기 6.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